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영업허가·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상시 근무 인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과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0개 부처 소관인 총 23개 법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그 결과 상시 근무 인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도 고용 중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면서, “이번 개정이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법제처	책임자	과 장 정세희	044-200-6740
	미래법제혁신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강창현	044-200-6736

연번	법령 제명	개정 조문	소관부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및 별표 11	국토교통부
2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
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	기상청
4	기상법 시행령	별표 4	기상청
5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기상청
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국가유산청
9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
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중소벤처기업부
1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산림청
1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0	행정안전부
1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1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1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행정안전부
16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기후에너지환경부
1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후에너지환경부
18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5	기후에너지환경부
19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5	기후에너지환경부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소방청
2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기후에너지환경부
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